

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 비교표 2024-04-12

번호	개정 대상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1	제3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	(7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, 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	(7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, 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	개인신용정보 전송 및 전송철회 요구 관련 필수 안내 사항 중 본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의 행사방법을 추가함 (MYPDS 및 마이데이터앱을 통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)